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제 1 형 사 부

#### 판 결

사 건 2023고합160 강제추행, 준강간미수, 피감독자간음

피 고 인 이재항 (840128 [REDACTED] 무직

주거 안성시 공도로 150, 106동 504호(공도읍, 케이씨씨스위첸아  
파트)

등록기준지 안성시 일죽면 주천리 466

검 사 이호진(기소), 심요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설창일

판 결 선 고 2023. 12.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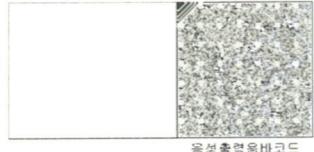
####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 이 유



증정 출판용 바코드

## 범 죄 사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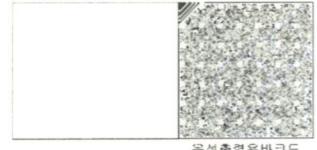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22. 11.경까지 안성시 소재 '롯데리아 OO점'에서 점장으로 재직하였고, 피해자 ■■(가명, 여, ■■)은 2018. 7.경부터 같은 지점에서 아르바이트 생으로, 2022. 5.경부터는 정직원인 부점장으로 각 채용되어 근무를 하다가 2022. 11. 경 위 지점에서 퇴사하게 되었다.

위 '롯데리아 OO점'은 ■■ 이 실제 운영하면서 점장 1명, 부점장 4명, 아르바이트 생 약 15명을 고용하여 햄버거 등 음식물을 판매하는 롯데리아의 가맹점으로, 피고인은 약 9년간 점장으로서 식재료 발주, 음식물 제조, 시설관리, 직원관리 등 점포 전반을 관리하였고, 부점장 중 1명인 ■■은 아르바이트생 및 부점장급 관리자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 중 부점장급 관리자 채용·진급의 경우 ■■이 다른 부점장들 및 피고인으로부터 의견을 구한 다음, 모두들 동의를 하면 위 ■■에게 채용·진급 건의를 하여 최종 결정이 되는 구조인데, 피해자 역시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부점장으로 채용이 결정된 바 있었다.

한편 2022. 10.경 '롯데리아 OO점' 부점장인 위 ■■은 위 지점에서 약 9년 가량의 근무기간 동안 8년간을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여 피고인과의 친분이 비교적 두터운 편이었고, 다른 부점장인 ■■ 위 ■■ 아들, 또 다른 부점장 ■■ ■■의 처형(妻兄)이므로, 피고인이 이들에게 직접 지시를 하기는 어려웠지만, 피해자의 경우 부점장들 중 연차가 제일 낮고 나이도 가장 어려 피고인은 평소 직접 또는 ■■ 부점장을 통해 아르바이트생들을 잘 관리하라며 업무 지시를 하거나 각종 업무를 가르치는 등 피해자를 관리·감독하여 왔었다.

### 1. 강제추행





증명서 출력일자: 2023.10.27

피고인은 2022. 10. 26. 저녁경 위 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주거지인 평택시 현촌 1로 7 소재 이편한세상평택아파트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위 지점 직원들 4명과 함께 회식을 하였다가 같은 날 23:00경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15경 위 아파트에서 위 '롯데리아 OO점' 방면으로 길을 따라 걷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롯데리아 OO점'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안성시 서동대로 3869, '밀모텔' 1층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가 객실이 없다는 말을 듣고 인근의 위 '롯데리아 OO점' 내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곳 사무실 테이블 위로 피해자가 엎드려 잠에 든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만취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마침 야간 근무 중이던 부점장 [REDACTED] 으로부터 "두 사람을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피해자와 함께 [REDACTED]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재차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REDACTED] 게 "피해자와 같이 갈 테니 근처 육교에서 내려달라."고 말하여 차에서 내린 다음 몸을 비틀거리 는 피해자를 부축해 가며 그녀의 주거지인 [REDACTED] OO읍 소재 OO아파트 OOO동 OOO호 현관문 안쪽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2. 10. 27. 00: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 피해자를 따라





온라인법원용바코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만취하여 그곳 안방 침대에 누워 잠에 들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다가 발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삽입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3. 피감독자간음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범행 이후 2022. 10. 27. 06: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와 집으로 귀가하였다가 같은 날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밥을 먹으러 가자. 준비를 하고 나와라. 차로 데리러 가겠다."며 피해자를 불러내어 안성시 원곡면 소재 식당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와 함께 점심식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식사를 마친 다음, 집으로 데려다 주려는 것으로 알고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며 안성시 원곡면 갈월길 31 소재 '더라인 무인텔'로 차량을 운전하여 간 다음, 차에서 내려 그곳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내지 13:20 사이경 위 무인텔 207호실에서, 피해자가 "이야기하러 들어온 것 아니었어요?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라고 거부함에도 그녀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피해자를 침대로 앉히고, 재차 피해자가 옷을 불들고 이불을 덮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며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자신이 피해자에 대한 채용 추천권을 행사한 바 있고 피해자가 이미 제2항 기재 피해로 인해 해고 등 직장에서 여러 불이익이 있을까봐 위축되어 있어 쉽사리 저항하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가슴 등을 애무하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증명서 번호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 증거의 요지

#### 1. 수영(가명)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 1. [REDACTE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CCTV영상 확인, 첨부 CCTV 영상 CD 포함), 수사보고서(밀 모텔 CCTV 영상 확인, 첨부 CCTV 영상 CD 포함), 수사보고서(더라인 무인텔 CCTV 조사, 첨부 CCTV 영상 CD 포함), 수사보고서(밀모텔, 피해자 주거지, 무인텔 CCTV 영상 사진정리, 첨부 CCTV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피해자 디지털포렌식 결과 전자정보 임의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디지털 포렌식 회신 자료 관련), 수사보고서(범죄 현장 사진 촬영)<sup>1)</sup>, 수사보고(롯데리아 OO점 사장 [REDACTED]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롯데리아 OO점 부점장 [REDACTED]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근무표

##### 1. 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자료 CD

### 법령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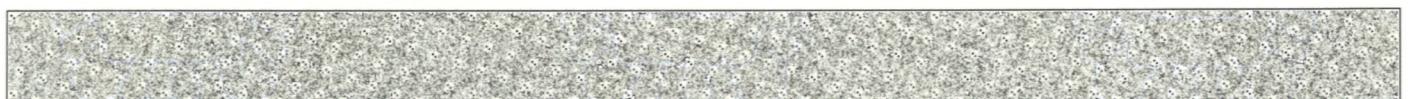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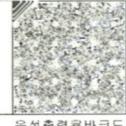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 미수의 점), 형법 제303조 제1항(피감독자간음의 점,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1) 증거목록과 증거기록에는 수사보고서의 제목이 '특수강도강간 범죄 현장 사진촬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 현장 사진촬영'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판권증명바코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1. 주장의 요지

가.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범행 당일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서로 간에 이성적인 호감이 생겨 피고인이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것 일 뿐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다.

나. 준강간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원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 한 것이다.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다. 피감독자간음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으며,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 2. 관련 법리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잊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온라인 출판용 바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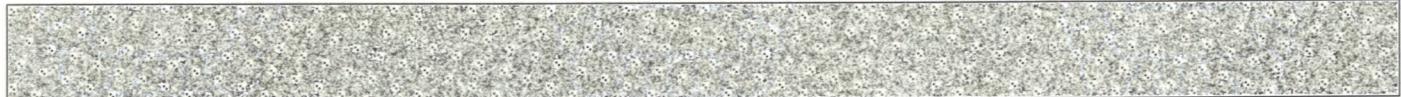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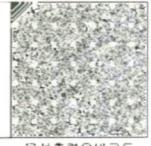
나.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다.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라. 피감독자간음죄에 있어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 · 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 · 경제적 ·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





증정 출력 용 바코드

1029 판결 등 참조).

### 3. 구체적 판단

#### 가.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회식을 마치고 택시를 잡기 위해 피고인과 길을 걸어가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였고, 이에 몸을 빼고 피고인과 거리를 두어 거부의 의사를 드러내었음에도 피고인이 재차 손으로 허리를 감싸는 행동을 하였다"며 피고인이 아무런 사전 교감 없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행동을 하였고, 그 직후 피해자가 회피행동을 하여 피해자가 그 행동을 용인한 것으로 오해할 여지도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가 길을 걸으며 '집에 혼자 있기 싫다', '외롭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를 만졌다"고 진술할 뿐이고(증거기록 209쪽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할 만한 상호간의 교감이 있었던 상황이나 그에 관한 피해자와의 대화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자신의 편의대로 피해자의 의사를 추측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던 것으로 보일 뿐 실제로 피해자의 의사를 묻거나 피해자의 감정, 반응을 살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당시는 물론 그 전후로도 피고인과는 특별히 이성적인 관계가 아니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혹하려고 대뜸 '집에 들어가기 싫다'거나 '외롭다'는 말을 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설령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입장에서 그 말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져도 된다고





온라인 접수용 바코드

허락하는 의미라고 받아들일 만한 아무런 이유나 근거가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 후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반응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상호 교감한 정도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어깨동무를 하거나 허리를 감싸 안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준강간미수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관계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없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고, 그로 인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가) 피해자는 사건 전날 19:00경부터 23:00경까지 롯데리아 ○○점(이하 '이 사건 롯데리아 매장'이라 한다) 점장인 피고인을 비롯하여 부점장들( [REDACTED], [REDACTED] 과 함께 직원( [REDACTED] )의 집에서 집들이를 하며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는 위 시간동안 마신 술의 종류, 양 등에 대하여 "부점장들은 와인을 마셨고, 피해자는 피고인, [REDACTED] 함께 페트병<sup>2)</sup> 소주 6병을 나누어 마셨다. 피해자는 소주잔으로 술을 마셨는데, 머그잔으로 소주를 마시던 피고인과 [REDACTED] 가 '너가 소주잔으로 마셔서 속도가 안맞는다'라고

2) 일반 소주병 용량(360ml)보다는 큰 용량의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접수 QR 코드

하며 술을 따라주는 횟수가 많아졌고, 이들이 따라주는 술을 계속 마시게 되었다. 술을 마시던 중간에 [REDACTED] 술에 취해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아 그 후로는 피고인과 둘 이서 소주를 나누어 마셨고, [REDACTED] 아들이 만들어준 칵테일을 마시기도 하였다. 소주로만 1병 반 이상을 마신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89, 90쪽 경찰 1회 피해자 진술조서, 757쪽 검찰 1회 피해자 진술조서), 피해자가 진술한 평소 주량(소주 1병에 미치지 못함)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당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자신의 평소 주량 이상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

나) 같은 날 23:00경 회식을 마친 뒤 각자의 주거지로 가는 방향이 같았던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택시를 타기 위해 회식장소를 나왔으나 택시가 잡히지 않아 계속 길을 걸어가던 중, 23:21경 피고인이 먼저 그 길목에 있던 '밀모텔'에 들어갔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 모텔에 들어갔다가 피고인이 종업원으로부터 여분의 객실이 없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함께 나와(피고인과 피해자가 밀모텔에 들어왔다가 나가는데까지 걸린 시간은 15초 정도였다), 그 곳에서 400m가량 떨어져 있는<sup>3)</sup> 이 사건 롯데리아 매장에 들렀다. 그 과정에서 '밀모텔' 입구와 카운터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는 피해자가 모텔 카운터 앞까지 들어갈 당시 만취상태 였다고 볼 만한 피해자의 특이 행동은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는 밀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벌어졌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강제추행 상황을 기억하며, 피고인과 밀모텔에 들어간 경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들어간 밀모텔을 롯데리아 매장으로 착각하여 함께 들어갔다가<sup>4)</sup> 종업원이 피고인에게

3) 증거기록 587쪽 지도 참조

4) 피고인의 변호인은 밀모텔 입구와 롯데리아 매장 입구의 모습이 현저히 다르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술에 취한 피해자가 당시에는 피고인을 따라 걷다가 건물 입구의 모습을 주의 깊게 보지 아니하고 따라 들어갔거나 별다른 생각을 하지 못한 채 건물로 들어가는 피고인을 따라 들어갔다가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당시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면서는 '(사실은 아무런 생각이 없었지만) 피고인이 어떤 건물로 들어갔다면 자신은 아마도 그 건물이 롯데리아 매장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다'는 취지를 '롯데리아 매장이라고 착각'하였다며 진술했을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당시에 피해자가 모텔 건물이라는 점을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모텔로 들어갈 당시에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모텔에 들어간 것인지를 알고 있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을 따라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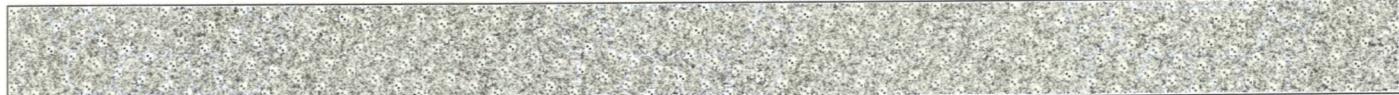
온라인 접수용 바코드

여분의 객실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밀모텔에서 나온 뒤, 피고인과 함께 있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으니 롯데리아 매장에 들어가자'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롯데리아 매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그 전까지는 정신을 차리려고 버티고 있었는데 롯데리아 매장에 들어가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난 이후부터는 긴장이 풀리고 술에 만취한 상태가 된 것 같다"며 갑작스럽게 취기가 오른 상황을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01쪽 검찰 2회 피해자 진술조서), 당시 롯데리아 매장에서 야간근무 중이던 직원 [REDACTED]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엎드리거나 많이 쭈구리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5쪽 백○민 진술조서). 당시 [REDACTED] 근무시간 중이었음에도 피해자가 집까지 걸어 가기에는 거리가 멀고 위험하다는 생각에 피해자와 피고인을 차에 태워 피해자의 집 앞 육교에까지 바래다 주었던 점(증거기록 146쪽 [REDACTED] 진술조서), 피해자가 [REDACTED] 차에서 내린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촬영된 피해자의 집 앞과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서는 피해자가 외투를 제대로 걸치지 않고 뒤로 제낀 상태로 눈을 감은 채 피고인에 이끌려 공동출입문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과,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쪼그려 앉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으켜 허리를 감싸고 지탱해주는 모습(그 순간 피해자의 머리가 뒤로 제껴지기도 한다),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선채로 눈을 감은 채로 서 있는 모습 등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롯데리아 매장에 들어간 것을 기점으로 상당히 취기가 올랐던 것으로 보이고<sup>5)</sup>, 위와 같은 피해자의 모습을 바로 옆에

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적인 접촉을 수락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다른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바, 과연 그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이익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5) 한편, 밀모텔 입구에 설치된 CCTV에는 피해자가 밀모텔에서 나와 걸어가다가 갑자기 쪼그려 앉기도 하고(23:22:19), 앉아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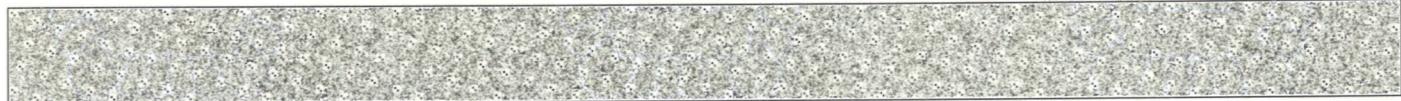
서 계속 지켜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사고나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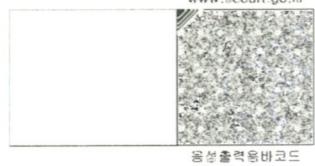
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여 잠이 든 상황에 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안방 문이 고장난 상태여서 평소처럼 안방과 연결된 베란다 창문을 타 넘고 안방에 들어갔고, 안방문이 닫혀있으면 집에서 키우는 개 2마리가 짖어대기 때문에 안방문을 열고 그대로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구체적인 기억에 의존하였다기 보다는 평소 자신의 습관을 기초로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평소에도 술에 취하면 집에 들어가서 씻지도 않고 잠드는 습관이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764쪽 검찰 1회 피해자 진술조서), 피해자는 앞서 회식자리에서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였고, 회식장소를 나와 롯데리아 매장까지 1.5km 거리를 걸어가기도 했던 점, 피해자가 집에 도착한 시점은 자정을 넘긴 시각이었고 이때는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시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sup>6)</sup>, 여기에 앞서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태까지 더하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 같이 집 안에 들어간 뒤 술기운과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곧바로 잠들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피해자는 2022. 10. 31.경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에 이 사건 범행을 최초로 신고할 당시 '집에 도착했는데 가해자가 어느 새 따라 들어와서 옷을 벗기고 키스하고 가슴을 빨고 콘돔 없이 2회 성기삽입을 했고, 사정은 안했다고 함'이라며 범행 당시 상황을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49쪽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부), 이후 경찰 조사와 검찰 1

다가 뒤로 넘어지는 모습(23:23:14)이 촬영되기도 하였는 바(증거기록 137쪽 CCTV CD), 당시에도 이미 취기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6) 혈중알코올농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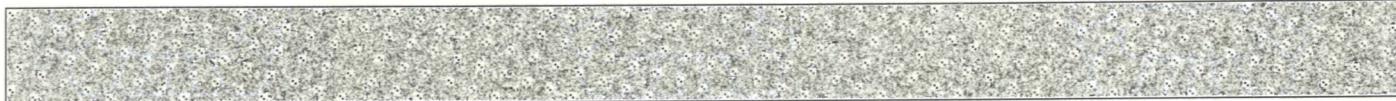




회 조사 시에는 '집에 들어가 잠이 든 뒤 새벽에 완전히 잠에서 깨기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3회 조사에서 검사가 위해바라기센터 진료기록을 제시한 뒤에야 "잠을 자다가 중간에 깨었을 때<sup>7)</sup> 누워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앓아있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려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913쪽 검찰 3회 피해자 진술조서), 이 법정에서는 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한 내용은 "주변에 얘기를 하면 여러 얘기를 듣게 되다 보니까 '나는 기억이 안나는데 그렇게 했었던 건가' 하고 기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21쪽).

이처럼 피해자가 알고 있는 준강간 범행의 내용이나 준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최초 신고 이후 이 법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다소 변경되고 그 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사건 이후인 2022. 10. 30.경 남자친구에게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려고 하고 있었고, 키스를 하고 가슴을 빨고 성기삽입을 했다'는 말을 하였으나,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그 기억이 나지 않아 진술하지 못하였고, 경찰 조사 후에 남자친구에게 진술내용을 말했을 때 남자친구로부터 '왜 나한테 얘기했던 피고인의 범행 당시 상황은 진술하지 않았느냐'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증거기록 912쪽 검찰 3회 피해자 진술조서)며 범행 직후까지도 기억하고 있었던 범행당시의 단편적인 기억을 초기 수사과정에서 진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숨김없이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 시점에 잠시 잠에서 깨었을 때에는 여전히 술이 깨지 않아 정확하게 자신이 어떤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여전히 항거불능의 상태였던

7)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개가 짖는 소리에 잠깐 잠에서 깨었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22쪽).





온라인 출석용 바코드

것으로 보여 그 상황을 상세히 기억하거나, 그 기억이 이 사건 범행 이후로도 일관되게 유지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잠이 완전히 깼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또는 강간치사)을 하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그 의미를 명확히 몰라서 검색을 해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 바, 잠든 동안 자신이 당한 피해에 관하여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봤을 것으로 추측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준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가 인식했던 바에 대한 진술이 다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 순간에 잠깐 잠에서 깨었다가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이내 잠이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sup>8)</sup>.

3) 피해자는 "새벽에 개들이 시끄럽게 짖어서 잠에서 완전히 깼고, 피고인과 피해자 둘 다 알몸으로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에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그러면 내가 강간(또는 강간치사)을 한거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94쪽 경찰 1회 피해자 진술조서, 765쪽 검찰 1회 피해자 진술조서), 실제 피해자 휴대전화의 인터넷 검색 내역에는 피해자가 같은 날 06:53경<sup>9)</sup>에 '강간살인죄, 강간치사죄' 등을 검색한 내역이 확인되는 바(증거기록 263쪽 수사보고), 이러한 검색 내역은 피고인이 언급한 법률용어('강간치사')의 의미를 명확히 알지 못해 휴대전화로 검색해보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증거기록 905쪽 피해자 진술조서)에 부합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다는 점을 자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2022. 10.

8) 피해자는 위 검찰 3회 조사 이후 이 법정에서도 '얼핏 잠에서 깨었을 때는 피고인이 성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23쪽).

9) 피고인은 같은 날 06:29경 피해자의 집을 나갔다(증거기록 72쪽 수사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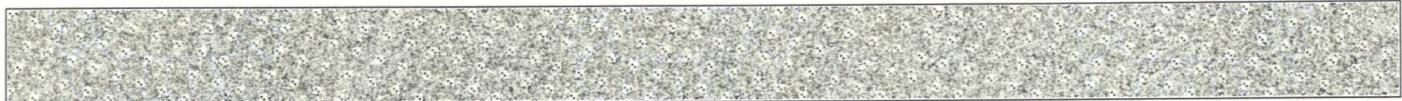
응선출현용바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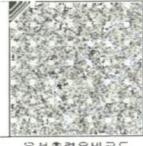
30. 오전까지는 통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당일 오후부터 갑자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못 다닐 것 같아요'라는 말을 시작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가 근데 진짜 궁금한데, 제가 뭘 했나요 왜 그러신건지 궁금', '왜 그러신거냐구, [10]이 점장님은 공도에 내려드린다 했는데 같이 내렸다 잘갔느냐라고 하셨네', '왜 같이 내린 건지도 전혀 모르겠구, 왜 그러신건지 궁금하다구요'(증거기록 65쪽 카카오톡 대화내용), '백매님이 태워다 주신 날 왜 같이 내리신 건지, 집 앞까지 데려가 준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안까지 들어왔는지 전혀 이해 안가고 모르겠음, 기억이 안 나지만 후에 개가 짖어서 깨니 이미..., 그래서 그 때 가심'(증거기록 69쪽 카카오톡 대화내용)이라며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합당한 설명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피고인은 처음부터 무슨 일 때문인지 반문하거나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은 채 바로 '무슨 말인지 알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이어진 피해자의 해명요구에도 이를 반박하지 않고 사과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상호간의 교감을 바탕으로 성관계 시도나 성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5)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방 침대에서 대화를 나누고, 팔베개를 하거나 키스를 하며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자신의 음부에 문지르는 등 피해자의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다.

가) 이 사건 당시 만 2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20살 가까운 연상의 유부남이자

10) [10]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증명서 출력용바코드

직장 상사인 피고인과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려 한 것 자체로도 이례적인 상황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직장 상사와 부하의 관계를 넘어서 성관계에 이를 만큼 서로 간에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거나(또는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성적 관심을 가져왔다거나) 사적인 만남이 있었다는 자료는 없고(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사적으로 만남을 가지는 사이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04쪽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이 사건 직전 회식 자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극적으로 서로 호감을 느끼는 관계로 변모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교제중인 남자친구가 있었고, 집에서 두 마리의 개(치와와, 닉스훈트)를 키우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개들이 낯선 사람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여<sup>11)</sup> 남자친구도 집을 방문한 적이 없다는 것이므로(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21쪽), 설령 피고인에 대하여 경계심을 풀고 있던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집에까지 들어오게 하는 것은 꺼릴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이전까지 한 차례도 자신의 집에 방문한 적 없는 피고인을 집 안으로 불러들여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을 것으로 보기是很 어렵다.

다) 피고인은 "회식장소를 나왔을 때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생각으로 밀모텔에 들어갔다"고 진술하며(증거기록 213쪽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에게 '방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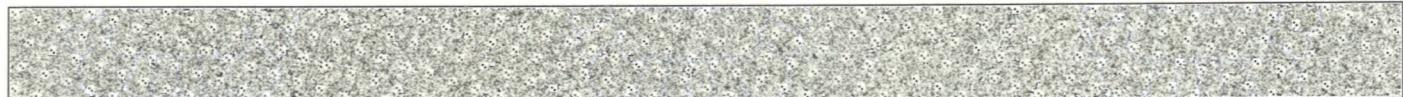
11)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만취상태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침입하였다면 위 개들이 짖는 소리 때문에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했을 리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개들을 방밖으로 내보낸 후 방문을 닫자 그 이후로 개들이 짖지 않아 방안에서 둘이 있을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개들의 짖는 소리를 듣는 것은 피해자에게 일상적인 일일 것이므로 만취한 피해자가 개 짖는 소리에 반드시 정신을 차릴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개들을 방 밖으로 내보내고 방문을 닫은 이후로 개들이 짖지 않았다면 위 개들이 더 이상 피해자를 깨우는 역할을 할 수 없었을 것임은 자명하다. 한편 개들이 누가 방 밖으로 내보냈느냐(즉 피해자과 피고인 중 누가 내보냈는지)에 따라 방문을 닫은 이후에 짖거나 짖지 않는 반응을 다르게 할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개들의 크기를 고려할 때 성인남성이 위 개들을 방 밖으로 내보내고 방문을 닫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라고 보이므로 위 개들의 존재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한다거나 피고인의 변소 내용을 뒷받침한다고 보기是很 어렵다.



나 잡을까'라고 물어보았을 때 피해자가 거절하는 말도 하지 않고 순순히 모텔 카운터 까지 따라 들어왔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모텔에 가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 했다며, 피해자의 집에 함께 가기 전에 이미 피해자와 성관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롯데리아 매장에 들어가는 것으로 착각하여 밀모텔에 따라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을 뿐이라며 피고인으로부터 밀모텔에 함께 들어가자는 제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sup>12)</sup>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처음부터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염두에 두고 모텔에 들어간 것이었고 피해자 또한 밀모텔에 들어갈 당시부터 묵시적으로나마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를 한 것이었다면, 밀모텔에 객실이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곳을 나온 뒤에 곧바로 다른 숙박업소를 찾아가지 않고 굳이 함께 롯데리아 매장을 들렀던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롯데리아 매장에 들어간 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모텔에 가자'는 제안을 한 사실이 없었던 점, 롯데리아에서 백○민이 피해자의 상태를 걱정하여 피해자를 집 근처까지 차로 태워다주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백○민의 호의를 거절하고 다른 숙박업소를 찾아 밖으로 나가지 않고 함께 백○민의 차량에 탑승한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밀모텔을 나와 롯데리아 매장에 들어간 것은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모텔로 데려가려 한 상황을 인지하고 이를 모면하기 위해 용변을 평계삼아 피고인에게 롯데리아 매장에 들어가자고 말하였기 때문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밀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피해자에게 모텔에 함께 들어갈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였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의 합

12) 설령 피고인이 '방 하나 잡을까'라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그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 말을 '방을 잡아줄 테니 여기서 (피해자 혼자서) 잠을 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는 있을지언정 '방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자'는 뜬금없는 제안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증명서류용바코드

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REDACTED]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롯데리아 매장에 들어와 인사를 한 것 이외에 대화를 나눈 적은 없고, 자신의 차량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고(증거기록 147쪽 진술조서), 피고인 또한 "피해자를 따라 [REDACTED]의 차량에서 내린 뒤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는 것이 싫다, 외롭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 이외에 피해자의 집에 방문해도 되는지 등에 대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부분은 진술하지 않았으며(증거기록 216쪽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의 집 엘리베이터 탑승 전후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거나 친근하게 스킨쉽을 나누는 모습 또한 확인되지 않는 바, 이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대화조차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게 하여 대화를 나누고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오히려 [REDACTED]은 "피해자를 먼저 내려주고 피고인을 내려주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몇 번이나 피해자를 따라 육교에서 내리겠다고 하여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를 함께 내려주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46쪽 진술조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겠다고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내려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일 뿐,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생각은 애당초 없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다. 피감독자간음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 1)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증명서용바코드

가)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준강간미수 범행 후 피고인으로부터 '밥을 먹자'는 연락을 받고 함께 식사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단 둘이 식사를 하게 된 상황임을 알게 된 후에도 이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이유, 식사를 마친 뒤 피고인으로부터 '할 이야기가 있으니 모텔에 가자'는 말을 듣고 수차례 '집에 가야죠'라고 말을 하며 거부했던 상황, 그럼에도 모텔 주차장으로 차를 운전하여 간 피고인을 따라 모텔 방으로 들어가게 된 경위, 모텔 방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위력 간음의 태양,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 이 사건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워) 롯데리아 방향으로 가지 않고 단 둘이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여기서 뛰어 내릴까'라는 생각도 했고, '뛰어 내린다고 바뀌는게 있을까'라는 생각에 가만히 있게 되었어요"(증거기록 100쪽 경찰 1회 피해자 진술조서), "(식사 후 모텔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마침 핸드폰 베터리가 1%여서 바로 꺼졌어요. 여기가 어딘지 모르고, 내가 내린다고 해서 안쫓아 올까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피고인이 차로 돌아왔어요"(증거기록 101쪽 위 진술조서), "(모텔 주차장 철문이 닫힌 후)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같혔다고 밖에 생각이 안되는 데 거기서 소리쳐도 누군가가 들어주지 않을 것 같고, 잘못했다가는 죽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았습니다"(증거기록 747쪽 검찰 1회 피해자 진술조서)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간음행위 당시 피고인이 때리거나 욕설을 하지는 않았다'(증거기록 747쪽 위 진술조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진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특별히 당시 상황을 과장하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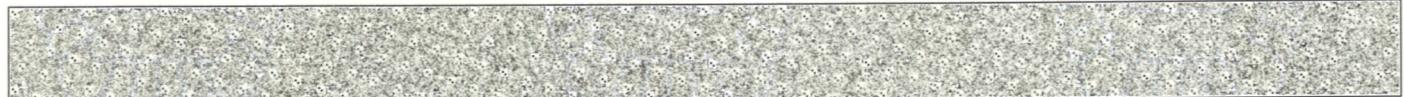
온라인 출판증명바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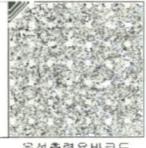
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왜곡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과 카카오톡이나 전화 통화 등 교류가 거의 없었으나, 이 사건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묻는 전화가 잦아졌고, 어느 날 갑자기 피고인이 전화하여 '얘기 좀 하자'며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하여 불안감을 느끼고 남자친구의 집으로 가 피해사실을 알리면서 사건을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109쪽, 756쪽, 898쪽 각 피해자 진술조서). 실제 피고인이 2022. 10. 30. 저녁경 피해자에게 6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고(부재중 전화 4차례 포함, 증거기록 127쪽 수사보고<sup>13)</sup>),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친분이 있었던 직원 [REDACTED]에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며 사건 이후 직장 상사인 피고인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 등에 관한 고민을 토로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313쪽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빌고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당시 동생의 교통사고로 인해 모친이 동생의 병간호를 하게 되면서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이 롯데리아 매장의 사장과도 매우 가까운 사이이고, 직원들로부터도 좋은 평을 받고 있었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증거기록 748쪽 내지 750쪽 검찰 1회 피해자 진술조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사실이 직장에 알려지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그와 같은 두려움과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 등을 모두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사실을 허위로 지어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

13) 피해자는 다음 날인 2022. 10. 31.경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증상 출력용바코드

자가 동생의 교통사고 때문에 돈이 필요하여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피해자의 무고동기를 진술하였던 것(증거기록 234쪽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과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기타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였던 사정도 찾을 수 없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롯데리아 매장 내 피고인의 지위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롯데리아 매장의 점주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점주로 있었던 2018. 7.경부터 아르바이트생으로 매장 근무를 시작한 뒤, 이 사건 발생 5개월 전인 2022. 5.경 부점장으로 승진하게 되었다. 비록 이 사건 롯데리아 매장은 사장이 따로 존재하고, 사장의 친,인척이 부점장으로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독자적인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과 부점장들이 의논하여 그 중 한명이라도 반대할 경우 정직원인 부점장으로 채용될 수 없는 인사결정 과정을 통해 피해자가 신규 부점장으로 채용되었고, 피해자는 롯데리아 매장에 근무하는 동안 상시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감독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지위를 고려할 때, 직장 회식에서 음주로 인하여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를 겪은 다음 날 아침에 자신의 방에서 피고인과 함께 알몸 상태로 잠에서 깨n 피해자가 이후 위와 같이 상급자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어떻게 대처해 나가려고 하는지 궁금해 하면서 일단 평소처럼 행동하며 피고인의 의도를 살피고 그 지시에 따르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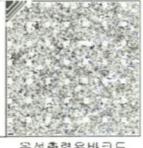


공성출판용바코드

분히 이해할만 하다. 여기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언제 어디로 찔릴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것 같고, 근무지도 공도터미널 지점으로 전근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749쪽 검찰 1회 피해자 진술조서)하는 등 롯데리아 매장의 점주이자, 사장과도 매우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했던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매우 신경을 썼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정직원인 부점장으로 채용되기는 하였지만 정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던 점(위 진술조서)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직장 내에서 피해자의 업무나 고용 관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요구에 반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모텔 방 안에서 피해자가 폭행이라고 인식할 만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행위를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장소는 피해자에게 낯선 교외에 위치한<sup>14)</sup>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텔이었고, 때마침 피해자의 휴대전화 베터리가 방전되어 피해자로서는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과 단 둘이 모텔방에 남게 되었던 점, 앞서 살펴본 피고인의 지위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자신을 간음하려는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반항을 하는 것이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난처한 상황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서 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침대에 눕히고, 옷깃과 이불을 불잡으며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옆으로 치우고,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간음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14)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모텔이 많이 있는 원곡면 쪽으로 운전하여 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4쪽 경찰 1회 피의자 신문조서)



증명서 출력용바코드

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 날부터 약 사흘간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일상적인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2022. 10. 30. 22:04경 피해자가 '못다닐 것 같아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이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는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자, 피고인은 '나도 너 만큼이나 현재가 너무 무섭고 두려워', '나도 지금 몇일째 잠도 제대로 못자고', '내가 죽고싶다'. '정신이 나간건지', '미안함과 죄책감이 얼마나 큰지 아니', '너를 힘들게 했다는게 미안해', '용서할수 없겠지만 미안해, 난 너한테 정말 이렇게 밖에 용서를 못 구하네', '내가 죽을죄를 지었어'와 같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다수 전송하였다(증거기록 56쪽 이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로 인해 가족들이 다칠 것 같아 일단 잘못을 인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37쪽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질책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위 대화에서 피고인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말한 것이 아님에도 가족들에게 끼칠 피해를 걱정하여 먼저 피해자에게 순순히 사과한다는 것 또한 통상적인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가 한동안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피고인의 잘못을 질책하였음에도 순순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피고인의 모습은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정상적인 남녀 간의 성관계에 응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였기 때문에 보인 모습이라고 봄이 자연스럽다<sup>15)</sup>.

15)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할 만한 이성적인 관계가 아니었음은 이 사건 준강제추행죄의 판단 부분에서 밝힌 바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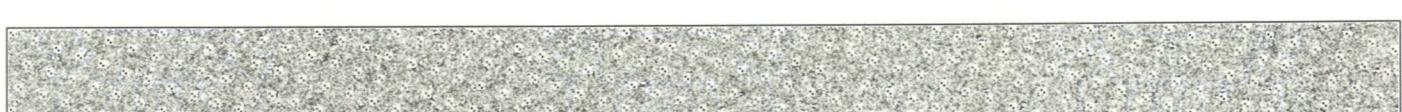




증명 출력용 바코드

4)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일인 2022. 10. 27.은 피해자의 근무일이 아니었음에도 피해자가 같은 날 18:00경 롯데리아 매장에 방문하여 피고인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며 대화하고, 피고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피고인과 양파를 구입하러 가기도 하였는데 이는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양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특정하게 정형화한 성범죄 피해자의 반응만을 정상적인 태도라고 보는 관점에 기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런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까봐 처음에는 혼자만 알고 있고 아무런 일도 없는 듯이 행동했다"고 진술하며(증거기록 109쪽 경찰 1회 진술조서),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 당일에 피고인이 자신을 불러 롯데리아 매장에 나간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나온 행동임을 진술하였고(증인신문녹취서 31쪽), 2022. 10. 31.경 피고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일하는 데에 지장 생기면 당장 나앉게 생겨서 아무렇지 않게 카톡 답장하구 근무 나가고 그러니, 그날 그렇게 하신거에 대해서 미안함이 1도 없는지 궁금하다'며 자신이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마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한 괴로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6쪽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음에도 오랜 기간 직장상사와 부하로서 형성하여 온 피고인과의 관계나, 직장을 곧바로 그만둘 수 없었던 당시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대외적으로는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갈등하는 상황이 서로 양립 불가능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즉시 외부에 알리는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 이상 간음 피해를 입은 당일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요청에 응하여





온라인판결문바코드

매장을 방문하거나, 근무일인 다음날(10. 28.)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성범죄 피해자라면 도저히 보일 수 없는 행동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준강간미수죄와 피감독자간음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롯데리아 매장 점주의 지위에서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이를 사이에 세 차례 범행을 저지른 범행의 반복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해자는 '저는 롯데리아에서 근무하는 게 재밌고 보람있고, 누가 너는 요새 가장 재밌는게 뭐냐 하면 일하는 거라 할 정도로 보람있는 일이었습니다'<sup>16)</sup>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의 직업에 강한 애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16) 증거기록 394쪽 ○파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증정 출력 용 바코드

인해 성적 수치심 뿐 아니라 오랜 기간 자신이 믿고 따랐던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관한 주변인들의 억측 등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결국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성적인 관계에 있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 피고인은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안태윤 \_\_\_\_\_

판사        김윤진 \_\_\_\_\_

판사        이선희 \_\_\_\_\_



# 등본입니다.

2023. 12.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법원주사보 최 유 민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